

제341회 도의회 임시회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2023. 8. 29.(화), 10:00

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(수석전문위원 김병기)

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배진석 의원 외 28명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 시행('23.9.22.)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- 지방공사 사장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직위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도지사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과 인사청문 운영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
- 인사청문요청안 첨부서류 및 회부와 질의, 증인 등 출석요구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~제9조)
- 인사청문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인사청문경과 보고, 자료제출요구, 인사청문회 공개의 원칙을 규정함(안 제12조~제15조)

- 인사청문대상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인사청문위원의 제척·회피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6조 및 제17조)
- 인사청문위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와 행정지원 및 준용사항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8조 및 제19조)

4. 검토의견

□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

-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은 법적 근거가 없이 자치단체장과 「인사검증 협약」으로 산하기관의 일부 직위에 대하여 인사 검증을 실시하여 왔으나,
- 지난 2월 27일 「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특정한 직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
- 인사청문 대상, 운영방식, 활동기간,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사 청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

□ 종합 검토의견

- 조례안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
 - 안 제3조, 인사청문 대상에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

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 중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정하여 인사청문 대상을 명확히 함

- 인사검증 협약('21.4.12)에 의한 인사검증 대상 기관은 경상북도개발공사,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등 7개 기관이었으나, 본 조례안의 대상 기관은 위 7개 기관을 포함하여 경북연구원 등 4개 기관을 추가하여 11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, 위 기관 외에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의회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대상 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안 제4조,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도지사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인사청문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인사청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,
- 안 제8조,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듣고 10분 이내의 모두 발언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 계획, 조직의 설립목적과 비전달성을 위한 계획 등 인사청문대상의 해당 직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
- 안 제15조,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후보자의 사적정보 누출, 기타 기밀사항이 누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인사청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보임

○ 지방자치법 47조의2 제3항은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개정된 법률안은 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선제적으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집행부의 인사권

견제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으로

-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해오던 인사청문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의 근거가 마련되어, 산하기관장이 해당 직위에 임명 전 실효성 있고 투명한 인사청문을 통하여
-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산하기관의 경쟁력 제고 및 도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일정 부분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- 참고로 대구광역시의회(7.31), 광주광역시의회(7.13)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음

□ 지방자치법

제47조의2(인사청문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· 부지사
 2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
 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
 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 · 출연 기관의 기관장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23조(부지사 · 부시장 · 부군수 · 부구청장) ① 특별시 ·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,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, 시에 부시장, 군에 부군수,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,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

1.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: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

령령으로 정한다.

2.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: 2명(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)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3. 시의 부시장,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: 1명으로 한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,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,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·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는 시·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·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.

④ 시의 부시장, 군의 부군수,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⑤ 시·도의 부시장과 부지사, 시의 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·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

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이 경우 부시장·부지사를 3명 두는 시·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□ 지방공기업법

제49조(설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행정안전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,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·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6조(설립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공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, 제53조제1항, 제56조제1항 및 제3항, 제57조, 제58조, 제58조의2,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,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, 제64조, 제64조의2, 제64조의4, 제64조의5, 제65조, 제65조의2, 제66조, 제66조의2, 제68조, 제69조, 제71조,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, 제72조 및 제73조,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공사”는 “공단”으로, “사장”은 “이사장”으로, “사채”는 “공단채”로 본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조(적용 대상 등)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(이하 “출자·출연 기관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,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(이하 “지방공기업”이라 한다)
 - 가. 지방직영기업
 - 나. 지방공사
 - 다. 지방공단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

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
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

4. 「민법」에 따른 사단법인

③ ~ ⑤ (생략)